

山林法施行令 및
施行規則改正案 立法豫告

林野賣買證明制 -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規制區域과 申告區域對象

1ha以上對象, 保全林地 3ha 미만分割禁止

산림청은 지난해 연말 山林法이 國會를 통과함에 따라 그 下位法規인 施行令과 施行規則을 마련함에 있어 同法 施行令, 施行規則改正案을 지난 3. 5일 立法 豫告한바 있다.

豫告期間은 20日間으로 3. 26까지인데 그 主要내용을 紹約하면 다음과 같다. - 편집자

施 行 令

1. 地方自治에 對備 權限의 下部移讓 擴大
(§ 4)

○市·道 移讓

保安林·採種林의 指定·解除 등

○市·郡 移讓

林產物加工業의 登錄등

2. 營林計劃制度 改善

○營林計劃作成 期間 變更 (§ 8)

山林所有者가 5年마다 營林計劃을 作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년마다 作成도록 變更하여 山林所有者的 負擔輕減

○營林計劃에 의한 施業의 申告畢證交付制度 廢止로 施業節次 簡素化 및 山林所有者 便宜圖謀

皆伐·擇伐·間伐등은 市長·郡守에게

申告하고 市長·郡守는 現地確認後 申告畢證交付

→申告만으로 施業 (§ 11)

○營林計劃作成 對象 山林調查(規則 §8)

- 寺刹林, 公園안의 山林과 他法令에 依하여 開發計劃이 確定되지 아니한 準保全林地도 營林計劃作成 對象 山林으로 追加하여 山林經營 内實化

- 宅地開發豫定地區內의 山林, 產業基地開發區域內의 山林, 特別市·直轄市의 都市計劃區域안의 山林은 營林計劃作成 對象 山林에서 除外

3. 山地利用의 極大化

保全林地와 準保全林地로 區分되어 있는 山林을 用途에 따라 다음과 같이 細分하여 多目的 利用과 開發을 促進

한국산림정책법

- **生産林地** - 要存國有林·林業振興促進地域등 木材生產을 為한 山林
 - **環境林** - 保安林·休養林등 國民保健休養과 公益機能增進을 為한 山林
 - **開發確定林地** - 農工團地등 他法令에 의하여 다른 用途로 開發이 確定된 山林
 - **開發未確定林地** - 其他 多目的 活用을 為한 豫備의인 山林
4. 保全林地 他用途 轉用에 따른 代替造林費 納入除外對象과 納入基準 設定 (§24-2)
- **納入除外對象**
公用·公共用事業을 為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가 保全林地를 轉用하는 境遇
 - **納入基準**
잣나무 大苗(7年生) 基準 造成費·育林費 參酌하여 每年 山林廳長이 告示
※ ha當 250萬원 程度, 年間 50億원程度 基金確保 可能
5. 林野賣買證明發給 對象林野等 (§ 109)
- **林野賣買證明을 發給받아야 할 對象林野**
~ 國土利用管理法上 土地去來契約 許可를 받거나 申告하여야 하는 規制區域과 申告區域內에서 買收 하고자 하는 面積이 1ha以上인 林野
※ 規制區域과 申告區域은 國土面積의 83%인 8,227千ha, 그 中林野는 總林野面積의 64%인 4,113千ha이나 實際 賣買證明發給 對象林野는 3,157千ha로서 林野面積의 49% 該當
 - **林野賣買證明發給 對象에서 除外者**
- 國家·地方自治團體
- 土地開發公社·住宅公社등 政府投資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 土地收用法에 의해 收用된 林野를 取得하는 者
 - 國稅·地方稅의 滯納處分되는 林野를 取得하는 者
 - 競賣法 또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하여 強制執行되는 林野를 取得하는 者
 - 公共用地의 取得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에 의하여 公共事業 施行을 위하여 林野를 取得하는 者
 - 山林經營을 目的으로 林野를 買收하는 篤林家·林業後繼者

施 行 規 則

1. 山林施業 緩和

- 菜林計劃 認可받은 山林所有者가 그 山林內에서 어린나무가꾸기를 為한 伐採·山菜·藥草·樹實·버섯·덩굴류의 採取등은 申告없이 任意로 施業 (§ 11)

2. 篤林家 認定基準等 (§ 9-6, 9-7)

- **篤林家區分**
模範篤林家, 優秀篤林家, 自營篤林家, 法人篤林家로 區分, 山林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가 認定
- **認定基準**
50ha以上 山林所有者로 模範的으로 山林을 經營하고 있는 者
※ 現在 山林廳 訓令으로 477名 認定

3. 篤林家에 대한 支援

- 산림사업에 諸요한 경비의 보조 또는 응자
- 國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의 우선권
- 산림사업에 대한 기자재의 지원
-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립가에 대한 포상

- 4. 林業後繼者 選拔基準 등 (§ 9-11)**
- 40 歲未滿의 者로서 林野所在地 市·道에 住所를 두고 다음資格을 갖춘者
 - 篤林家의 子女
 - 10ha 以上의 山林所有者
 - 高等學校以上 教育機關에서 林業을 專攻하고 5ha 以上의 山林을 所有하고 있는 者

- 5. 保全林地의 分割禁止 (§ 19-2)**
- 保全林地는 다음의 境遇를 제외하고 分割不可
 - 國家·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公共用事業을 위하여 必要時

- 2人以上 共同所有山林의 處分必要時
- 債務擔保로 提供된 山林을 分割時
- 1筆地의 一部가 林野以外의 形狀으로 土地形質이 變更된 때
- 3ha 以上으로 分割하는 境遇

6. 林產物加工業의 登錄對象 등 (§ 43-2)

- 登錄對象 林產物加工業
 - 製材業·合板生產業
 - 포플러製品 生產業(割蓍, 성냥, 나무도시락등)
 - 林產燃料生產業等

問答式으로 알아본 林野賣買證明制

어떻게 施行되나

〈자료 : 산림청 경영계획과〉

1. 임야매매증명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야매매증명제는 임야의 생산목적 이용을 촉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임야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래 부동산투기가 임야를 중심으로 성행함에 따라 임지가의 급등과 함께 방치산림이 증가하고 있어 공익자원인 산림을 투기로부터 보호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토지공개념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행 불가피한 제도인 것이다.

2.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금년 7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지난 1월 13일 공포된 산림법개정법률이 공포후 6월 이후부터 발효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산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일자를 각각 '90년 7월 14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매매증명발급을 받아야 하는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과 신고지역내 임야로서 매수면적이 1ha 이상될 경우가 매매증명 발급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상임야라 할지라도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천연보호림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내 임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내 임야의 경우는 매매증명